

석면조사 및 해체·제거 대상 (제62조 관련)

1.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

- 1)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m^2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^2 이상인 경우

※ 단,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이 200m^2 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00m^2 이상

- 2) 설비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에 면적의 합이 15m^2 또는 부피의 합이 1m^3 이상인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등의 자재

- 3)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

2. 고용노동부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해체·제거 대상

- 1)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m^2 이상인 경우

- 2) 석면이 1%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등